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7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모경중 · 이성윤 · 박홍배
문정복 · 이정문 · 신정훈
박 정 · 김남희 · 김준혁
박성준 · 이상식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건물 준공 후 입주 초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의 하자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승강기의 설치 등”을 “승강기의 설치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로 한다.

제27조를 제27조의7로 하고, 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7조의7(중전의 제27조) 중 “때”를 “때(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27조의6에 따른 조치를 끝냈을 때를 말한다)”로 한다.

제27조(승강기의 설치 등) ① 승강기 설치공사를 도급하는 자(제조·수입업자가 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설치공사업자가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설치공사”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설치공사업자는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표준품

셈 등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 등) ① 발주자는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 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승강기(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중간검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하는 검사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

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건설공사용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발주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공사용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①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

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2.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설치공사업자가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설치공사업자(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5(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4.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6(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

제31조 앞의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 또는 발주자(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설치공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이력정보

5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이력정보

제7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발주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제76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

6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78조제2항제5호를 제5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6(종전의 제5호) 중 “제27조”를 “제27조의7”로 한다.

5.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5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5의3.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사용증명서 및 사용금지 표지의 발급

5의4.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5의5.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

제80조제1항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자

16의3.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0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4의3.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제82조제1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4의4. 제27조의6을 위반하여 정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제2항제11호를 제1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의 중지를 방해한 자

제82조제2항제11호의3(중전의 제11호) 중 “제27조를”을 “제27조의7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제8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
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신 설>	제27조(승강기의 설치 등) ① 승 강기 설치공사를 도급하는 자 (제조·수입업자가 설치공사업자 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 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설 치공사업자가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설치공사”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설치공사업자는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설치공사비의 산정기 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 단가, 표준품셈 등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 검사 등) ① 발주자는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승강기(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중간검사: 건설공사용 승강기

의 임시사용검사 후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하는
검사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
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
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
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
기 성능의 저하로 건설공
사용 승강기 이용자의 안
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
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
용검사

<신 설>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발주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공사용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①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

람으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
리자(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건
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
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2.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
의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
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
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업자
로 하여금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

<신 설>

리자는 설치공사업자가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설치공사업자(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5(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3.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4.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 설>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
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
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
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지
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
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6(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발주자는 건설공
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
강기에 대하여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7(승강기의 설치신고) --

--- 때(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27조의6에 따른 조치를 끝냈
을 때를 말한다)-----

<신 설>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

제2절 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

<삭 제>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

---- 같다) 또는 발주자(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설치공사업자를 포함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6. ~ 14. (생략)

②·③ (생략)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입
시사용검사 이력정보

5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
전검사 이력정보

6.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발주자: 건설공사용 승강
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사고
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7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7. ~ 12. (생략)

② (생략)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수수료)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

6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사용검사

5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5의3.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사용증명서 및 사용금지 표지

<u><신 설></u>	<u>의 발급</u>
<u><신 설></u>	<u>5의4.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 의 접수</u>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 신고의 접수 6. ~ 11. (생략) ③ ~ ⑤ (생략)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략)	<u>5의5.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u> <u>5의6. 제27조의7</u>----- -- 6.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① ----- ----- ----- -----.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 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입 시사용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 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자</u>
<u><신 설></u> 17. ~ 28. (생략)	<u>16의3.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운행정 지명령을 위반한 자</u> 17. ~ 2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5. ~ 11.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임시 사용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4의3.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5. ~ 11.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신 설>

<신 설>

5.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신 설>

<신 설>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승강장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4의4. 제27조의6을 위반하여 정

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 7.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

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11의2.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

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

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사용의 중지를 방해한 자

11의3. 제27조의7을 -----

--

12. ~ 20.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1. ~ 8.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1. ~ 3. (생략)

12. ~ 20. (현행과 같음)

③ -----

-----.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
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
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
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
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④ -----

-----.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
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
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⑤ (생 략)	까지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